

자유전공학부

학부·반 학생회장단 선거 시행세칙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세칙 제1호]

2017. 5. 27. 제정

2017. 8. 1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기관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일정

제2절 후보등록

제3절 선거운동

제4절 이의제기

제5절 징계

제6절 투표

제7절 투표성립

제8절 개표

제9절 당선

제10절 확정 및 기타

제5장 선거기록물 관리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자유전공학부 학부·반 학생회장단 선거 시행세칙은 자유전공학부 학부·반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학부·반 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자유전공학부 학부·반 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단, 반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 동시선거일 때만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 ① 본회 정회원은 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② 반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은 각 호를 따른다.
 1. A반 소속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정회원은 A반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2. B반 소속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정회원은 B반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3. C반 소속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정회원은 C반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4. D반 소속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정회원은 D반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③ 투표인 명부는 자유전공학부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재학생 명단, 휴학생 명단, 타 학부 학생 중에서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명단을 참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5조【피선거권】

- ① 본회의 회원인 자는 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② 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 학부 학생회장 후보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 그 후보는 3학기 이상 등록자이어야 한다. 단, 학부 학생회장 후보와 학부 부학생회장 후보 각 한명씩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 경우 둘 중 한 명만 3학기 이상 등록자인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반 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선거일 현재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과 이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 ④ 학부운영위원의 자격을 갖고 있거나 학부 학생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가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해당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
- ⑤ 징계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는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3장 기관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목적】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제8조【의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과 세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투표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표 독려를 해야 한다.

제9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과 이 세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5.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과 이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6. 그 외에 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10조【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투표 개시일 21일 전에 학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 되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부 학생회장단을 제외한 학부운영위원 및 학생회칙 제 64조 제5항에 의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자 전원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반 학생회장단 동시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부운영위원 및 학생회칙 제 64조 제5항에 의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자 전원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인준 받은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선거관리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모집인원이 12인 이상일 경우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의 총원이 필요할 시 선거관리위원을 추가로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을 학부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 ⑤ 선거시행세칙 제13조제2항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의 결손이 생겼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을 총원하지 못한다.
- ⑥ 선거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되었을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며, 학부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해체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은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장】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학부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 시에는 선관위 내부적 호선을 통해 다른 선관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단, 이를 학부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의 소집요구
 -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 ③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제13조제2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 파면에 관한 안건은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1. 후보자
 - 2.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직권남용】

- ①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 본회 선거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본 회 회원은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파면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파면은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은 재적 위원과 출석 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남용】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을 남용해 본회 선거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본회 회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를 학부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징계가 접수되었을 때 학부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 3인, 학부운영위원을 제외한 학생대표자회 대의원 중 3인의 모집을 요청하여 징계위원회를 결성한다. 징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징계의 방법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39조를 따른다.

제15조【재정 및 운영】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사후 전액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선거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를 학부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비용에 대한 결산을 작성하여 이를 학부운영위원회 회의

에서 심의 받는다.

④ 학부운영위원회 회의는 심의 후 선거관리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16조【정의】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후보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17조【의무】

-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19조【모집공고】

-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을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후보의 이름, 소속 학부·과·반, 학번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학부·과·반, 학번
 4. 담당자 한 명의 연락처
 5. 500자 내외의 선거운동본부 소개
- ② 선거운동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공고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다.

제20조【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학생회장단 후보가 임명한다.
- ③ 학생회장단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단,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21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

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일정

제22조【선거 일정의 결정】

- ① 본회 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 학생회장단 선거는 6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생회장단 선거일정은 선거 공고, 등록 기간,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개표일, 당선공고로 구성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기간을 5일 이내, 선거운동기간을 5일 이내, 투표일을 3일로 하여 선거일정을 정한다. 등록 기간과 투표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그 외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후 최소한 투표 개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재투표의 경우, 투표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개시의 뜻
2. 선거 일정
3.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목록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명단
5.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서약 내용 및 서명

제2절 후보등록

제24조【후보등록】

① 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전공학부 학부·반선거시행세칙」 제5조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학증명서
2.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3. 선거운동본부명
4. 출마 소견문

5. 50인 이상의 회원 추천서명-50인 이상의 회원 추천서명에 있어서 당해 연도 입학한 학번 10명 이상, 이전 연도 입학한 학번 10명 이상, 그 이전에 입학한 학번 1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선거본부 소속 운동원 명부

② 반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일 현재에 2학기 이상 재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2.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3. 선거운동본부명
4. 출마 소견문

5. 15인 이상의 회원 추천서명-15인 이상의 회원 추천서명에 있어서 당해 연도 입학한 학번 5명 이상, 그 이전에 입학한 학번 5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선거본부 소속 운동원 명부

- ③ 후보등록 서류양식 및 제출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양식 및 제출 방식이 아닌 서류는 모두 무효이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학생회장단 선거 등록자에게 동일한 서류양식 및 제출방식으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 ⑤ 추천서명은 추천인의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의 서명을 추천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다.

제25조【후보 등록 심사】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검토한다.
-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검토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해야 한다. 단, 하자가 있을 시, 즉시 등록 불가 의사와 그 사유를 공고한다.
- ④ 등록이 마무리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퇴고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제26조【복수추천의 허용】

선거권자는 동일한 선거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동시에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일후보에 대한 중복 추천 서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7조【후보자의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제28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후보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유전공학부 회칙 제 10조를 따른다.

제29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해야 한다.
 - 1. 후보의 이름, 소속 학과·반, 학번
 - 2. 선거운동본부명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학과·반, 학번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0조【후보자가 없는 경우】

후보로 아무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모든 후보의 사퇴 등으로 후보가 없어 해당 선거가 무산된 경우, 「자유전공학부 회칙」 또는 「반 학생회칙」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31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 ②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개인유세·합동유세
 - 2. 선전물의 게시·배포

3. 간담회·공청회
 4.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5.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6. 그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 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 행위
- ④ 선거운동은 본회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32조【선거운동기간】

-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이 마무리 된 이후부터 투표일 전날 24시 사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부착된 전지규격의 선전물은 투표 종료일까지 게시 가능하다.
- ② 사전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추천 서명을 받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
3. 본회 회원 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선전벽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완료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선전벽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후보의 사진, 이름, 소속 학과·반, 학번
 2. 선거운동본부명
 3. 핵심 공약
- ② 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선전벽보의 수량과 게시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35조【선거운동 일정의 보고의무】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일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받은 사항 중 일정이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정한다.
- ③ 보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며, 그 위반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해야한다.

제36조【선전물의 사전허가】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련 선전물을 선거관리위원의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 ② 선거 관련 선전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전물을 게시·배포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해당 게시물·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선전물】

- ① A0규격을 초과하는 선전물은 게시할 수 없다.
- ② 선거운동기간 중에 게시된 선전물은 투표 종료일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단, 투표소로부터 10m 이내에 게시된 선전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인물과 20쪽 내의 소책자를 배포할 수 있으며, 유인물과 소책자의 규격 및 개수 등의 사항은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로 결정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원이 타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의 게시·배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유세】

- ①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 ② 개인유세는 8시부터 20시까지 가능하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개인유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39조【합동유세】

- ① 두 개 이상의 선거운동본부가 등록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유세를 개최해야 하며, 합동유세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담당한다.
- ②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순서는 합동유세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 ③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 당 유세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등 유세시설을 철거하여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합동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에 따라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 ⑤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유세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장내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그밖에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41조【후보간담회】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 중 간담회를 주최할 수 있다.

제42조【공청회】

-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본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선거운동본부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동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공청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제 하에 개최된다.
- ④ 공청회의 사회는 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 ⑤ 공청회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한다.

제43조【선거운동 비용】

- ① 선거운동비용은 후보 등록 시부터 당선인 결정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금전, 물품, 채무 등 모든 재산상 가치를 말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운동 비용의 최대 80%까지 학생회비에서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을 투표를 통해 당선 및 낙선이 확정된 이후,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결산을 작성하여 이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받는다. 이 때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학부운영위원회는 학생회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절 이의제기

제44조【이의제기의 방식】

- ① 본회 회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 ④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선거운동본부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제45조【이의제기의 처리】

-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징계

제46조【징계】

징계라 함은 이 세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징계의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2.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제48조【징계의 종류】

선관위는 징계의 종류를 제47조의 사유에 비례해 정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바를 따른다.

1. 위반사유의 공고
2. 징계결정 익일간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49조【자격의 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1. 제47조 1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3회 징계를 받은 경우
2. 제47조 2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2회 징계를 받은 경우
3. 제47조 1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2회의 징계와 제47조 2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1회 징계를 받은 경우

제6절 투표

제50조【투표방법】

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투표인명부의 열람】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투표소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투표인명부를 열람할 수 없다.

제52조【투표관리】

선거관리위원들은 특정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제53조【투표소】

-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 ② 투표소 1개 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해야 한다.
-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⑤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투표일·투표시간】

- ① 투표는 3일간 진행한다.
- ② 투표는 10시 00분부터 시작하여 19시 00분에 종료한다. 단, 마감할 때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시작되기 10분 전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55조【투표용지·투표함】

-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학생회장단 후보자 성명, 소속 학과·반,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수가 많은 순서로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정한다.
- ④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 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기권” 란을 두어야 한다.
- ⑥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요원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 ⑦ 선거관리위원의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 ⑧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⑨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을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 ⑩ 투표함은 자물쇠로 봉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⑪ 투표함의 열쇠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한다.

제56조【투표용지 수령】

- ① 투표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의 학생증, 신분증, 여권 등과 함께 본인의 학적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교부함과 동시에 투표인명부에 투표인을 표시해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자의 서명을 해야 한다.

제57조【기표절차】

- ①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로 들어가 준비된 기표도구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기표를 한 뒤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투표용지를 접어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한다.
- ② 기표행위의 실수 시, 투표용지를 재교부하지 않는다.
- ③ 동일기표소에 2인 이상이 들어갈 수 없다. 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투표소에서의 선거관리위원 업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투표소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9조【투표참관인】

-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 한 자를 말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을 투표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 1인씩 배치하며, 교체 가능하다.

- ④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사임할 수 없다.
- 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한다.
- ⑥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이의제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 ⑧ 투표참관인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선거관리위원과 함께 검사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불참할 경우 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일 투표소 설치에 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 ⑨ 투표참관인이 지각했을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의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투표를 진행한다. 지각한 투표참관인은 자신의 도착 이전에 이루어진 투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0조【투표의 중단】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중단시킨다.
 - 1.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이 없을 때
 - 2. 투표참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 3. 투표소 내에서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인해 합의가 필요할 때
 - 4. 투표소의 질서가 혼잡하여 공정한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② 제1항에 명시한 상황이 종료되었을 경우 바로 투표를 재개한다.

제61조【투표소 주의사항】

- ① 투표소 부근에서 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 투표인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다고 판단될 때 선거관리위원은 이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투표소로부터 10m 이내에서 투표참관인을 포함한 모든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식을 지녀서는 안 된다.
- ③ 투표소로부터 1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이 제재한다.
- ④ 투표소로부터 10m 이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선전벽보 외의 어떠한 선전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62조【투표의 비밀보장】

- ① 투표의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63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 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9시 30분에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해당 선본의 정후보 또는 부후보의 입회 하에 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 및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한 명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64조【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 ③ 자물쇠를 이용해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선거관리위원 혹은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65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66조【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제7절 투표성립

제67조【투표 성립 요건】

학생회장단 선거는 3일간의 투표 기간이 지나고 명부상 투표율이 20% 이상일 경우 성립한다.

제8절 개표

제68조【개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개시일 전까지 개표 장소와 개표 시간을 공고해야 한다.

제69조【개표관리】

-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승인 하에 진행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전까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고, 개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 ④ 각 선거운동본부의 학생회장단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장소에 있어야 한다.
- ⑤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개표현장을 참관하도록 한다.
- ⑥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상황에 대한 이의제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제70조【개표소】

- ① 개표소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71조【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각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제72조【개표개시】

- ① 개표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시행 한다.
- ②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한 때에 그 봉인 등을 확인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한다.
- ③ 투표함 하나의 개표가 끝나기 전에 다른 투표함을 열어서는 안 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소의 질서가 지나치게 혼잡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는 질서 회복이 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할 수 있다.

제73조【개표절차】개

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 투표자 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득표를 후보 별로 분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6. 현황판에 기재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8.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9. 최종 결과 발표

제74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5.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요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③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제75조【투표함의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단, 명부상 투표자 수가 100 이하일 때는 오차는 3까지 허용한다.

②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76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77조【개표참관인】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78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9조【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당선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

제80조【당선의 기준】

- ①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개표 결과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선 후보로 한다.
- ②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보다 많을 경우 그 후보를 당선으로 본다.
- ③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을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2. 최고 득표 후보가 두 후보 이상일 때
 3. 1위 득표 후보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후보가 있을 때
 4.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에 기표한 사람의 수를 넘을 때
 5. “반대”와 “기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의 합이 “찬성”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 보다 많을 때

제81조【당선공고】

-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회장단 당선자의 이름, 소속 학과·반, 학번
 2. 학생회장단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투표 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총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한다)

제10절 확정 및 기타

제82조【재투표·결선투표】

- ① 총오차율이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②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후보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

한다.

-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 ④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7일 안에 3일 동안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후보를 당선으로 한다.

제83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재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 2. 재투표에서도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보다 많을 때
- 3. 재투표에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0% 이상이 아닐 때

제84조【투표기간 연기 및 연장】

- ①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때 투표율 미달,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표를 연기 혹은 연장할 수 있다. 단, 투표연장의 경우 최대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표를 연기할 수 있다.

제85조【선거 무효】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처리가 되고,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해당 선거에서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
- 2. 선거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되었을 경우

제5장 선거 기록물 관리

제86조【선거 기록물 관리】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 기록물 관리기관은 최대한 협조한다.

부칙 <2017.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1항은 2020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조3항의1호는 2018년 11월 선거부터 적용한다.
3. 제10조1항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선거 시기 조정을 위한 준비행위】

제22조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6월 반 학생회장단 선거 다음 순서로 시행하는 반 학생회장단에 대한 세 차례의 선거는 2017년 9월, 2018년 11월, 2020년 6월에 시행한다.